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5.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홍성룡 의원 외 19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19. 7. 25.
- 다. 회부일 : 2019. 8. 13.
- 라. 의안번호 : 78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
-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돼야 함.
-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같은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진 섬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독도)을 정벌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음.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512년)에 처음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의 지리지(1454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각종 고문헌에도 일관되게 ‘우산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음.
- 특히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¹⁾를 제정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으며, 광복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

1)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함.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외교부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 그러나 1905년 2월 일본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며, 시네마현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시네마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²⁾
- 2005년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를 일본의 현으로 편입·고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2006년부터 매년 열고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등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음.³⁾
- 또한 2008년 일본정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 및 교사의 학습지도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문제를 공식적인 영토문제로 설정하고,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지리과 교과서를 2015년~2017년에 걸쳐 검정·승인한 바 있음.⁴⁾
- 2017년 6월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기하고, 2019년부터 고교생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하는 등⁵⁾,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과 영토관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임.

2) 「독도 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5.6.

3)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2019.6.

4)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19.6.

5) H, 고교서도 독도왜곡 의무화...교과서 역사·영토 도발 일지, 연합뉴스, 2018.8.30.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防衛白書⁶⁾)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 영유권을 현재까지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교청서⁷⁾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들도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보복성 경제조치에 대한 철회와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함.
- 이에 천만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2008년과 2010년, 2012년 세 차례 독도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으며,
 - 경상북도의의회는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6) 일본정부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릴 목적으로 일본과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함.

7) 일본의 주요 외교활동과 정책 기초를 종합적으로 담은 연례보고서.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도수호 문제가 외교·국방 등 대부분 국가사무의 영역에 속하고, 경상북도와 달리 직접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아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활동범위와 성과 등에 있어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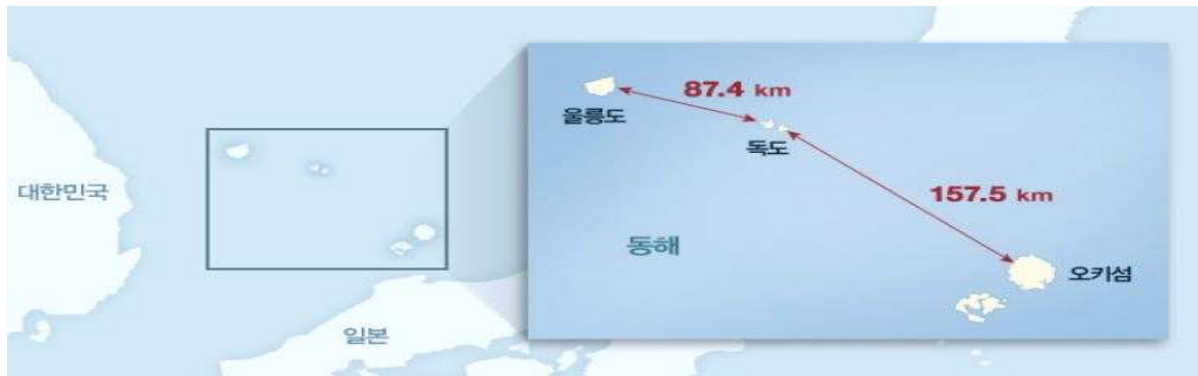
3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반복되는 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독도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전에 구성되었던 독도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성과,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붙임자료 1 독도 일반 현황(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 **독도의 구성 및 위치**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 187,554㎡)되어 있으며, 울릉도로부터는 87.4km, 일본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km 떨어져서 위치해 있음.



(출처 : 외교부 독도, 자료,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 **서도**

-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주민숙소)
- 크기 : 둘레 2.6km, 면적 88,740㎡(5필지), 높이 168.5m
- 주요시설물 : 주민숙소, 음용시설, 등반로



(출처 : 외교부 독도, 자료,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 동도

-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독도경비대)
- 크기 : 둘레 2.8km, 면적 73,297㎡(7필지), 높이 98.6m
- 주요시설물 : 독도경비대, 독도등대, 위성안테나, 접안시설, 등반로



(출처 : 외교부 독도, 자료,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 기타 89개 부속도서

- 25,517㎡(89필지)

□ 보존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자연생태가 우수한 특정도서로서 관리되고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 주변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이용, 해양과학 연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음

붙임자료2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연도	역사적 사실
512	(韓) 우산국 복속 → 신라 이찬(伊漚)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
1454	(韓) 『세종실록』 「지리지」 →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
1625	(日)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면허 → 일본 막부가 돛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
1693	(韓) 안용복(安龍福) 일본 납치 →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 중 울릉도에 온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
1694	(韓)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 실시
1695	(日) 일본 돛토리번 답변 → 일본 막부가 돛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에 대한 질문(12월 24일)에 대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돛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 함
1696	(日)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 일본 막부는 돛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
1696	(韓) 5월, 안용복(安龍福) 일본 도해 →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음
1770	(韓) 『동국문헌비고』 「여지도」 →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1870	(日)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탈내탐서』 →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
1877	(日) 「태정관(太政官)지령」 →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
1900	(韓)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 고종 황제는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함
1905	(日)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고시 →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
1906	(韓) 3월,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 → 울도군수 심홍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로 “본군 소속 독도”라고 명시 (韓)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림
1946	(韓)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 (韓)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
1951	(韓)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